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



[시행 2024. 3. 15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-11호, 2024. 3. 15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정보통신산업정책과), 044-202-6229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고 한다)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고 한다)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 행하는 사업(이하 "기금사업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 - ② 기금의 운용·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이하 "장관"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관리기관"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을 말한다.
 - 2. "전담기관"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·평가·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3. "사업수행기관"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기금의 운용 · 관리

제4조 삭제 <2024. 3. 15.>

- 제4조의2(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4조의3(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) ① 영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[별지 제1호서식]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[별지 제2호서식]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)** ①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.
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관리기관의 자산운용 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제6조(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.
 - ②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
- 제7조(자산운용지침) ① 관리기관의 장은 「국가재정법」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,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
 - 2.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
 - 3.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
 - 4.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
 - 5.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
 - 6.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-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, 안전성,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- 1. 금융기관(체신관서 포함)에 예탁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함)
 -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 - 3.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
 - 4.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
 -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)** ① 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기사업계획서와 기금운 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기금의 사업목표,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포함한 운용총칙
- 2. 기금조성계획 및 자금운용계획
- 3.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
- 4.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,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
- 5.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국가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편성)** ①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기금사업의 목적과 내용, 기금사업에 소요되는 경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계획서
 - 2.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계획
 - 3. 자금수지계획(기금・자체수입과 그 밖의 수입을 재원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)
 - 4.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
 - 5.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 -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수 있다.
 - ④ 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.
 - ⑤ 장관은 출연금 및 보조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할 때에는 이를 지원받는 기관의 사업수입, 결산잉여금,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금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)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- 2.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회계업무
 - 3.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
 - 4. 그 밖에 기금의 징수·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
 - 5. 삭제 <2022. 1. 00. 개정>
 - 6. 삭제 <2022. 1. 00. 개정>
 -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장 기금의 회계 등

- 제11조(기금의 회계기관 등)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,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.
 -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. 다만, 그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12조(기금의 회계처리)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·지출과 자산·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기금의 납입) ① 기금수입징수관 및 재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계정에 수입금을 납입하게 하려면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원인행위를 하고,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기금의 지출) ①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려면 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기금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「국고금관리법」제 22조 및「국고금관리법 시행령」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지출절차에 따른 다.
- 제15조(자금운용계획)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·지출의 전망과 그 밖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,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기금의 배정 및 인출) ①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.
 - ③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「국고금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17조(회계서류의 보존)**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・지출・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,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8조(기금의 운용·관리 경비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지출사업의 이월)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-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려면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0조(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「국가재정법」및「국가회계법」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장관은 「국가재정법」제73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체납처분의 중지·유예) 장관은 기금수입금의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처분 건이 발생하는 경우「국세징수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장 기금사업의 수행

- 제22조(사업의 수행기간) 관리기관·전담기관·사업수행기관(이하 "관리기관등"이라 한다)이 수행하는 기금사업의 기간은 「국가회계법」상 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제2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23조(기금 지원금의 관리)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("기금 지원금"이라 한다)을 다른 용도의 자금 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를 지정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, 기금사업 회계담당자로 지정받은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<단서 삭제>
- 제24조(기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을 해당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장관은 기금재원 배분 계획과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기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기금사업의 재정집행 및 수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점검계획(기금사업비 집행실태 점검을 포함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 - ④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관련 비리 및 부패 방지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5조(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) ① 장관은 사업의 성격상 협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,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, 권리와 의무관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26조(출연사업) ① 장관은 해당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담기관, 출연금액,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27조(보조사업) 보조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 다만,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고,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42조에 따른 부속지침을 적용한다.
- 제28조(위탁사업)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금 사업의 경우 위탁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사업의 목적과 내용,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, 위탁사업비의 비목은 위탁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책연구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비목을 준용한다.
 -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 체결 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**제29조(국가연구개발사업)**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른다.
- **제30조(정책연구사업)** 기금으로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」에 따른다.
- 제31조(협약사항 등의 변경) ① 장관은 기금사업의 협약 체결 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·수행계획서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 및 협약체결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2조(수행상황 보고) ① 전담기관은 기금사업의 수행상황(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다)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관에게 보고하고,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중간보고: 매년 7월 말일까지
- 2. 최종보고: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
- 3. 정산보고 :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필요한 때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보조사업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 다만, 장관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33조(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) ①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금사업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평가범위와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 -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 기금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성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, 사업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 -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33조의2(협의체 구성·운영) ① 장관은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, 기금사업의 효율성 추진 및 성과 창출을 위하여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협의체는 기금사업 성과 확산 및 홍보, 기금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, 기금사업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강화, 기금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- **제34조(기금사업 결과의 공개)**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.
- 제35조(출연금 보조금등의 이월) 관리기관등은 장관이 교부한 기금사업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36조(기금사업 집행 잔액 및 불인정액, 이자수입의 처리) ①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.
 - 1. 관리기관
 - 가. 전담기관·사업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
 - 나.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계 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다.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·사업수행기관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 사업자로부터 반납 받은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반납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2.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
 - 가. 전담기관·사업수행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의 기금계 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.
 - 나. 전담기관·사업수행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교부받은 출연금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기관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과 불인정액, 이자에 대해서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과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장 보 칙

- 제37조(자료의 제공요청)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, 사업완료보고서,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8조(보고의무)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기금의 운용현황(여유자금 운용현황을 포함한다)
- 2.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
- 3. 지원자금의 회수내역
- 4.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- 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재정상태표, 재정운영표,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기금사업 월별 집행현황,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관리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지도・감독) ①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징수・운용 및 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・감독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징수 · 운용 및 관리 결과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기금사업의 관리 또는 수행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 또는 관리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그 업무를검사 또는지도·감독하게 할수있다.
- ④ 장관은 관리기관등이 고의, 거짓 등 위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,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40조(비밀유지의무) 관리기관등의 임직원은 기금의 징수·운용 및 관리, 기금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41조(권한의 위임) ① 장관은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 등의 제·개정 및 관련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국장에게, 그 밖의 사무는 해당사무를 보조하는 담당과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
 - ② 장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42조(부속지침의 제정·운용)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기금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.
 - 1.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
 - 2.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
 - 3. 제32조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
 - 4.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
 - 5. 제33조2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
 - 6.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
 - 7. 그 밖에 장관이 기금사업 부속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43조(기금사업 적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칙 <제2024-11호,2024.3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장관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